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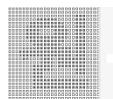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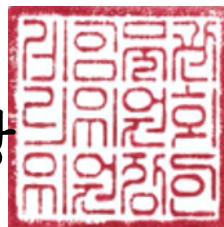
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

- 등급분류번호 : 제 CC-OP-240926-002 호
- 등급 : 청소년이용불가
- 상호(법인명) : Proxima Beta Pte.Limited
- 성명(대표자) : Vincent Wang
- 제명(원제명) : Delta Force
- 원작자(원작국적) : 원작정보 없음
- 규격 및 용도 : PC/온라인 게임

「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
위와 같이 등급을 분류·결정하였습니다.

2024년 9월 26일

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



Certificate of Rating Classification for Game Product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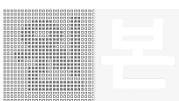
1. Rating Classification Number: CC-OP-240926-002
2. Rating: 19
3. Trade name(Corporate name): Proxima Beta Pte.Limited
4. Name(Representative): Vincent Wang
5. Title(Original title):
 Delta Force
6. Original Work Producer: N/A
7. Platform: PC/Online Game

According to the Article 22 in 「GAME INDUSTRY PROMOTION ACT」 ,
Rating has been classified and determined as follows.

2024. 09. 26.



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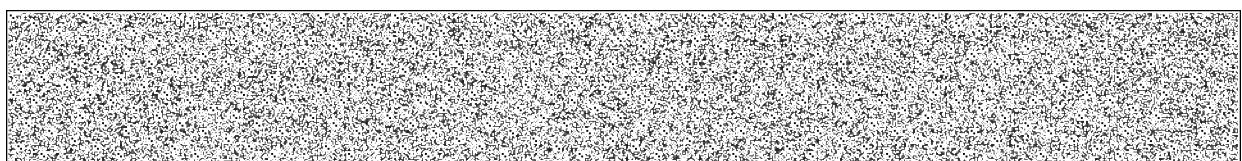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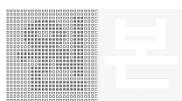


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

접수일자 : 24.09.09

등급분류결정일 : 24.09.26

| 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|
| 게임명 | Delta Force | 신청사 플랫폼 장르 | Proxima Beta Pte.Limited PC/온라인 게임 FPS/TPS |
| 결정등급 | 청소년이용불가 | | |
| 등급분류 결정사유 | <p>2035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1인칭 FPS 게임</p> <p>* 과도한 폭력 표현 - 전투 과정에서 붉은색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</p> <p>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'청소년이용불가'로 등급분류 결정함.</p> | | |
| 내용정보 표시사항 |  신정성  폭력성  공포  언어의 부적절성  약물  범죄  사행성 | | |
| 기타사항 | | | |



0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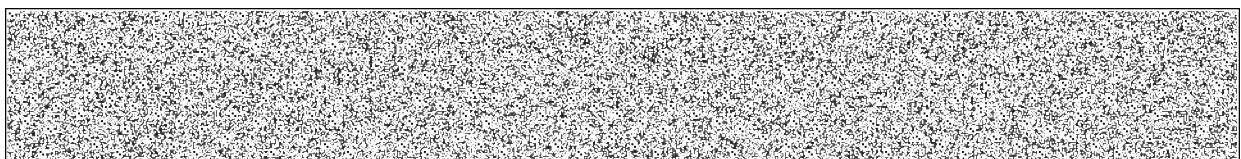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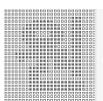
< 주의사항 >

- 등급 심의 후 소프트웨어나 기기를 개조, 변조 할 수 없습니다. 등급 부여 받은 그대로 제작, 유통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(게임법 32조 1항 2호)
- 등급 심의 후 내용이 변경되거나(업그레이드, 패치 등) 기기의 외장이 바뀌는 경우 재 등급 분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,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또한 내용수정신고 내용이 등급의 변경 등을 요하는 정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(게임법 제21조 제5항)
- 심의를 받은 게임물은 내용물 정보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(게임법 33조 1항, 2항)
- 등급 분류 심의 필증의 위·변조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. (게임법 32조 1항 5호)
-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.

- 관련 :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3조 (표시의무) 제1항
게임법 시행령 제19조 (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)
부칙 제4조(상호,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)

2. 표시 방법

| | 아케이트 | 온라인 | 모바일 | 콘솔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용 등급 | 별도의 표로 표시 (게임기 외관 전면 부착) | 웹, 런처, 게임초기화면, 게임시간 1시간마다 | 게임 실행 시 초기화면 | 게임물 포장겉면 및 매뉴얼 표시 |
| 내용 정보 | 게임기 외관전면 | 웹, 런처, 게임초기화면, 게임시간 1시간마다 | 게임 실행 시 초기화면 | 게임물 포장겉면 및 매뉴얼 표시 |
| 상표 및 제작정보 | 별도의 표로 표시 (게임기 외관 전면 부착) | 웹사이트 게임 소개 페이지에 표시 | 게임 내 별도의 표 작성 | 게임포장 뒷면, 이용설명서 뒷면 |
| 부연 설명 | 청소년이용불가의 경우 경고문 표시 | 게임실행 시 초기화면에 표시 | 게임 실행 시 초기화면에 표시 | - |



가. 아케이드 게임물

1) 아래의 요령대로 표시 하여야 하며, 표의 바탕색은 '전체이용가'는 초록색, '청소년이용불가'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명 | ○○○○○ | 상 호 | (주)△△△△△ |
| 이용등급 | 전체이용가 | 등급분류번호 | 00-000000-000 |
| 일련번호 | 00000000 | 제작연월일 | 2006. 10. 30. |

또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물은 아래의 경고문을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. (화면 가로 최대크기의 50% 이상으로 3초 이상 표기 권장함)

이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
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

2) 유형별 표시 크기

- 일체형 전자 게임물 : 5cm(가로) X 3cm(세로)
- 일체형 게임물 : 10cm(가로) X 6cm(세로)

3) 표시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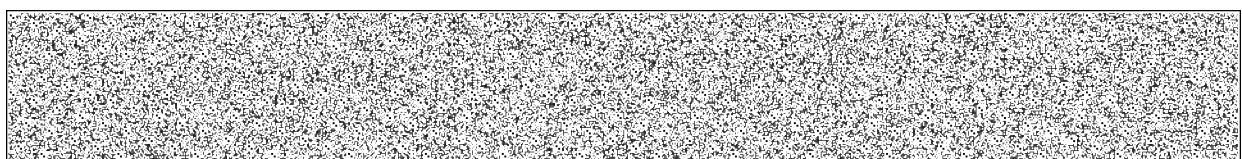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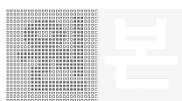
- 게임기 외관 전면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비닐재질로 덧씌워야 한다.

4) 내용정보표시

- 게임기 외관 전면에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.

(내용정보표시)

※ 등급분류결정서를 참조하여 아래의 예시요령으로 표시함
(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함)



나. 온라인, 모바일, PC게임물, 비디오 게임물 적용
 1) 이용등급 표시 요령 및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요령
 (이용등급 표시)

| 전체이용가 | 12세이용가 | 15세이용가 | 청소년이용불가 | 평가용(유예) | 등급면제 |
|---|--|--|---|--|--|
|  전체이용가 |  12세이용가 |  15세이용가 |  청소년이용불가 |  평가용 |  등급면제 |

(내용정보표시)

※ 등급분류결정서를 참조하여 아래의 예시요령으로 표시함
 (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함)



선정성



폭력성



공포



언어의 부적절성



악물



범죄



사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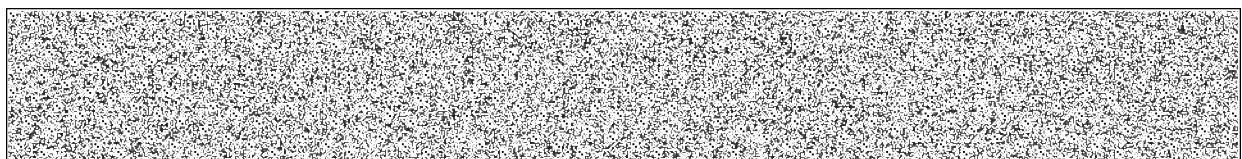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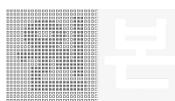
적용사례)

가)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

- 게임 초기화면, 런처화면(온라인게임물) 우측 상단에 이용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하며, 이는 출력화면의 15% 이상으로 표시 하여야 하며, 이용 등급과 함께 등급 분류에 따른 부연설명을 출력화면의 25% 이상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.
-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시간 1시간마다 이용등급을 상기의 요령으로 3초 이상 표시 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옵션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단,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에서 표시한 경우 제외 됩니다.

| 게임 홈페이지 | 런처 화면 |
|---|--|
|  |  |
| 게임 실행 시 초기화면 | |
|  |  |
| 게임 실행 화면 | |



나) 개인용컴퓨터(PC)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
○ 포장의 표면 앞면 우측 상단에 포장물 가로 최대크기의 10%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(적용사례)

개인용컴퓨터(PC)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의 포장 결면



2) 상표 및 제작정보 표시
가) 온라인게임물 : 아래의 요령으로 웹사이트에 표시 하여야 한다.
나) 모바일게임물 : 게임 내 이용정보 소개(도움말 등)란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.
아래 표의 내용이 전부 들어가야 하며, 아래 양식에서 모바일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.
다) 개인용컴퓨터(PC) 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: 이용등급과는 별도로 게임 포장물 뒷면에
아래의 요령으로 상표 및 제작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(상표 및 제작정보 표시)

|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 명 | ○○○○○ | 상 호 | (주)△△△△△ |
| 이용등급 | XX이용가 | 등급분류번호 | 00-000000-000 |
| 등급분류 일자 | 2006. 10. 30. | 제작·배급업신고번호 | 0000000000 |

○ 표시 방법 : 상기 표의 바탕색상은 아래의 기준에 따름
- 전체이용가 : 초록색 - 12세이용가 : 청색
- 15세이용가 : 노란색 - 청소년이용불가 : 적색

* 예로 든 게임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.
이해를 돋기 위해 임의로 표기 하였습니다.

